

1. 개정이유

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과정에서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제품이 새롭게 등장하여, 이를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개정

- 1) 제철용으로 한정된 소결제의 용도를 제련, 제강용으로 확대
- 2) 수산부산물을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·복토재·도로기층재·채움재·양빈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수산물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수산물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3호나목 중 “대체재로서 제철용”을 “대체재로서”로 하고, 같은 표 제5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다. FR-5-3: 수산물부산물을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·복토재
· 도로기층재·채움재·양빈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[별표1]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(제2조 관련)

현 행	개 정 안
1. 수산부산물을 원형 그대로 재사용(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 재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는 유형(FR-1) 가. FR-1-1: 수산부산물을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나. FR-1-2: 수산부산물을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2. 수산부산물을 단순 수리·수선하거나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유형(FR-2) 가. FR-2-1: 수산부산물을 단순 수리·수선하거나 세척하여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나. FR-2-2: 수산부산물을 단순 수리·수선하거나 세척하여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다. FR-2-3: 수산부산물을 단순 수리·수선하거나 세척하여 김종자 배양용 인공채묘판으로 재사용하는 유형	

3. 수산부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제조하는 유형(FR-3)

가. FR-3-1: 분리, 선별, 압축, 감용(減容), 절단, 파쇄, 분쇄, 용융(熔融), 반응, 증발 또는 농축 등의 공정을 통해 수산부산물을 종이, 금속, 유리, 합성수지·섬유, 고무제품 외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

나. FR-3-2: 수산부산물을 석회석의 대체재로서 제철용 소결제(燒結製: 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철강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부재료를 말한다) 또는 탈황제(脫黃劑: 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황 성분을 없애는 데 쓰이는 물질을 말한다)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

다. FR-3-3: 수산부산물을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

라. FR-3-4: 수산부산물을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

마. FR-3-5: 수산부산물을 「약사법」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

나. FR-3-2: 수산부산물을 석회석의 대체재로서 소결제(燒結製: 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철강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부재료를 말한다) 또는 탈황제(脫黃劑: 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황 성분을 없애는 데 쓰이는 물질을 말한다)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

- 바. FR-3-6: 수산부산물을 「화장품법」에 따른 화장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
4. 수산부산물을 제품으로 제조하는 유형(FR-4)
- 가. FR-4-1: 수산부산물을 유·무기성 화합물, 산화물 등의 화학물질이나 안료, 도료, 페인트, 착색제 등의 화학제품으로 제조하는 유형
- 나. FR-4-2: 수산부산물을 석회로 제조하는 유형
- 다. FR-4-3: 수산부산물을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1호의 철강슬래그(선철이나 강철을 제련한 후 남은 비금속성 찌꺼기를 말한다)와 혼합하여 친환경 투수블록(작은 구멍이 많이 있어 빗물을 흡수하고 보유하는 블록을 말한다)으로 제조하는 유형
5. 연안환경개선이나 해양정화 등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(FR-5)
- 가. FR-5-1: 수산부산물을 「골재채취법」 제29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을 위하여 복원재로 사용하는 유형
- 나. FR-5-2: 수산부산물을 인공어초(바닷속 수산생물의 번

식 등을 돕기 위해 산란장·
서식장 등을 조성하기 위하
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
다)로 제조하거나 인공어초
로 사용하는 유형

< 신 설 >

다. FR-5-3: 수산부산물을 토양이
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·복
토재·도로기층재·채움재·양
빈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
형

6. 농업이나 토질개선을 위하여
재활용하는 유형(FR-6)

가. FR-6-1: 「비료관리법」에
따른 비료(퇴비를
포함한다)를 생산하는
유형

나. FR-6-2: 「사료관리법」에
따른 사료를 생산하는
유형
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
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외
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
고시하는 재활용 유형(FR-7)